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2. 11. 9 선고 2021가단3708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2. 10. 19.

판 결 선 고 2022. 1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2017. 5. 2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 협의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D에게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7. 5. 25. 접수 제105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466156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4. 21. ‘소외 D는 원고에게 5,061,9995원 및 그 중 2,724,328원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망 E은 2013. 1. 30.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F, G, H, I, 소외 D, 피고, J가 있으며,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7. 5. 25.자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을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소외 D에 대하여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3. 사해행위 여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D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소외 D가 피고 등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해당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4. 피고의 선의 항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소외 D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7523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소외 D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비록 채무자인 소외 D의 채무초과인 상태가 인정되었으나, 소외 D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원금 총액 자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그 중 원고 판결금 채권의 원금은 2,724,328원임). 더욱이 피상속인인 망 E의 사망 시점인 2013. 1. 30.경을 기준으로 소외 D는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② 원고가 소외 D를 상대로 제기한 위 양수금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기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마쳐질 무렵인 2017. 5. 25. 소외 D는 물론 피고로서도 원고 등 채권자들이 소외 D를 상대로 채권추심에 나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피고가 소외 D의 재정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나 규모 공시가액, 소외 D의 상속지분(1/7) 등을 고려하면, 소외 D가 포기한 상속재산의 가액이 특별히 고액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며, 당시 소외 D 뿐만 아니라 피고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 모두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였다.

④ 피고는 고향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거주하였는데, 다른 형제들이 그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여 부모님이 모두 사망한 이후 피고가 부모님에 대하여 한 기여나 노력의 보상 차원에서 피고에게 상속재산협의분할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사망 직후 가족들 사이에는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사실상의 협의를 하였고, 그 이후에 등기만을 정리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철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충청남도 예산군		대 200㎡
2. 충청남도 예산군		대 58㎡
3. 충청남도 예산군		대 163㎡
4. 충청남도 예산군		대 4㎡

- 이 상 -

